

● **환경부령 제946호**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률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10월 14일

환경부장관 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에 제1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: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. 다만,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.

5.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: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(異見)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, 의견제출,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5조제4항 중 “영 제20조의2제2항”을 “영 제20조의2제2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(이하 “물질안전보건자료”라 한다)를 작성·제출하지 않는 경우: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

2.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·제출하는 경우: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(위해성정보)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. 다만,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·신고번호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

나.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

제5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

제55조의 제목 “(자료보호의 신청 등)”을 “(자료보호의 요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료보호신청서”를 “자료보호요청서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신청”을 “요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보호신청서”를 “자료보호요청서”로,

나 노 물 질	입자크기				
	입자크기분포				
	입자모양				
	종횡비(縱橫比, aspect ratio)				

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등록의 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등록의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톤 이상 1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톤 이상 1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,000톤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분자화합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나노물질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송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 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학 물질 ([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)
--------	---

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 중 ①연간 제조(수입)(예정)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연간 제조(수입) (예정)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1톤 이상 1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톤 이상 1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,000톤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분자화합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나노물질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송분리중간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등록신청사항란 중 ⑤등록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등록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톤 이상 1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톤 이상 1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,000톤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분자화합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나노물질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송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 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 학물질 ([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)
-------	---

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사항란 중 등록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등록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톤 이상 1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톤 이상 1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1,000톤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분자화합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나노물질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송분리중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학물 질 ([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0.1톤 이상 1톤 미만)
------	---

별지 제16호 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제2쪽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물 리	성상		녹는점	
	끓는점		증기압	

적·화학적특성	인화점		옥탄올/물 분배계수 (LogKow)	
	물용해도		입자크기(나노물질만 해당합니다)	
	입자크기분포()		입자모양(나노물질만 해당합니다)	
	종횡비(縱橫比, aspect ratio, 나노물질만 해당합니다)		기타	

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중 “신청인”을 “요청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 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] 보호 자료 []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15일(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)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요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요청사항	① 자료 보호(보호기간 연장) 요청 요지 및 이유
	보호대상 자료 목록

수입자 (요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② 상호(명칭)	③ 사업자등록번호	④ 대표자	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⑥ 수입량(톤)	⑦ 수입국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

자료 [] 보호
[] 보호기간 연장 을(를)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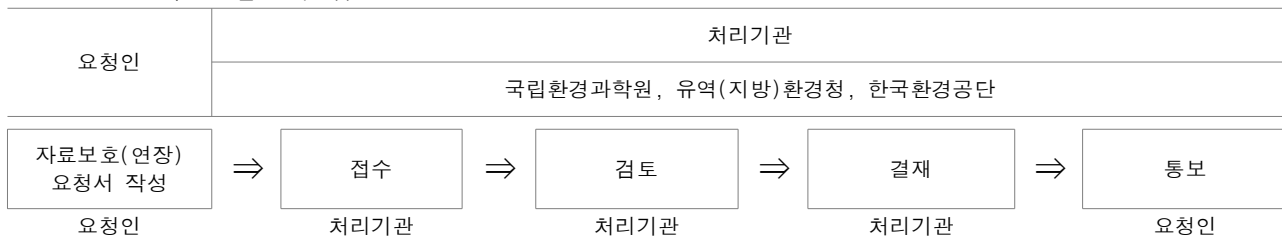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. 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연장을 요청하는 경우: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: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란은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,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- ②란 ~ ⑦란은 요청인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다만, ⑥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분자화합물 및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하고,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